

## 약관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순번	기존	개정(안)
1	<p>제23조 약관변경승인 등</p> <p>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 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제23조 (약관변경승인 등)</p> <p>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p> <p>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내역서(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요금,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li> <li>2. 결제방법, 소액신용한도 관련 대금결제일</li> </ol> <p>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p> <p>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⑤ 카드사는 이자율·할인율·연체요금 등 각종 요금을 회원의 신규카드 발급 및 이용대금 청구시에 알려드리며, 카드사 및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p> <p>⑥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개별통보,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의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p>
2	<p>제10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p> <p>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p>	<p>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li> <li>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li> <li>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li> </ol> <p>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li> <li>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li> </ol> <p>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li> <li>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li> </ol> <p>부칙 제1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p>
3	<p>제13조 연체료</p> <p>① 회원은 대금 결제일에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카드이용정지, 탈회, 각종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카드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및이에 수반하는 모든 수수료와 함께 그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 연체료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수수료)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p>	<p>① 회원은 예금잔액이 소액신용한도 범위 내 사용한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대금결제일(결제가능일 중 회원이 지정한 날)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널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p> <p>*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p> <p>**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일)</p>
4	<p>제 21조 카드이용정지 및 탈회</p> <p>①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li> <li>4.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5. 신용정보기관의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판명되었을 경우</li> <li>6. 타금융기관 연체정보 등 외부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사가 판단한 경우</li> </ol>	<p>①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6호 내지 제8호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만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li> <li>2.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li> <li>3.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li> <li>4.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li> <li>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li> <li>7.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li> <li>8.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li> </ol>
5	<p>제 12조 자동이체결제</p> <p>② 제 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p>	<p>②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p>
6	<p>제13조 연체료</p> <p>② 제 1항의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p>	<p>② 카드사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회원의 신용등급 및 신용도, 국가경제·금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연체료율을 정할 수 있으며, 위 사정이 변할 경우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개별 통지 후 연체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p>
7	<p>제 20조 변경사항의 통지</p> <p>② 제 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p>	<p>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p>
8	<p>제9조 (카드이용제한)</p> <p>①회원은 할부구매,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p>	<p>① 회원은 할부구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p>
9	<p>제16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p> <p>②~이 경우 분실·도난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 ~</p>	<p>②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 사용금액에 대하여는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전화권유 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 ~</p>
10	<p>제19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p> <p>①회원(또는 대리인)은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p>	<p>①회원(또는 대리인)은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p>